

일본 특점금지법 개정(안) 개요¹⁾

본 연합회

1. 과징금 산정율의 인상 등▶

1. 현행 산정율(제조업 등 : 대기업6%, 중소기업3%, 도매업1%, 소매업 : 대기업2%, 중소 기업1%)을 각각 2배 정도로 인상한다.
2. 과거 10년 이내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적이 있는 위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기 1의 산정율에 5배 정도 가산한 산정율을 적용한다.
3. 과징금과 법인에 대한 형사벌(벌금)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액에서 벌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해진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은 당해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한다.
4. 중소사업자가 협동하여 사업을 하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의 산정율 적용대상으로 한다.
5. 과징금 산정기간의 상한을 3년간에서 4년간으로 연장한다.
6.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없는 금액을 50만엔 미만에서 100만엔 미만으로 인상(과징금액이 10만엔 이하일 때에는 그 납부를 명할 수 없다)

2. 과징금 적용대상 범위의 재검토▶

현행의 대상행위를 변경하고, 과징금 적용대상을 다음에 언급하는 행위로 한다.

- (1) 부당한 거래제한에서 대가에 관한 것 또는 실질적으로 공급량, 시장점유율 또는 거래상 대방을 제한함으로써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에 의한 사적독점에서 당해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대가에 관한 것 또는 실질적으로 당해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1) 본 자료는 일본 월간「公正取引」2004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한 것임.

또는 역무의 공급량, 시장점유율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 (3) 구입에 관한 부당한 거래제한에서 대가에 관한 것 또는 실질적으로 수요량, 시장점유율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사적독점 · 부당한 거래제한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과징금 감면제도의 도입

1.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부당한 거래제한을 행한 자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공정취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최초로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보고 등을 행한 때
- (2)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그만 둔 때
- (3) 공정취인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사이에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보고 등을 행한 때

2.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액수를 50% 공제한다.

- (1)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공정취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 2번째로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보고 등을 행한 때
- (2)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그만 둔 때
- (3) 공정취인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를 명할 때까지의 사이에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보고 등을 행한 때

3.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의 액수를 30% 공제한다. 단, 당해 사업자 수와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와의 합계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일정한 기간(공정취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날)까지는, 공정취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한 때
- (2) 위에서 언급한 (1)의 보고 등을 행한 이후, 위반행위를 그만 둔 때
- (3) 공정취인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를 명할 때까지의 사이에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보고 등을 행한 때

4. 공정취인위원회는 상기 1(2), 2(1) 또는 3(1)에서 규정하는 보고 등을 받았을 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히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위의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

(1) 보고 등에 있어서 허위 등이 있었을 때

(2) 다른 사업자에 대한 상기 제2의 1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할 것을 강요하고, 또는 다른 사업자가 당해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방해할 때

6. 위의 1에 의해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함과 동시에 당해 사업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과징금 면제제도는 기업의 자율준수(compliance) 노력을 후원하고, 위반행위로부터 자발적 이탈을 종용하게 하는 것 등에 의해서 위반행위의 계속·확대의 방지에 이바지하게 된다. 단, 기업의 compliance 노력 그 자체를 과징금 면제제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현장검사 전의 첫 번째 신청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표 한다.

4. 범칙조사권한의 도입 등

1. 공정취인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직원(이하 「위원회 직원」이라 함)은 범칙사건(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범칙협의자 등에 대하여 출두를 요구하고, 질문하며, 소지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또는 임의제출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회 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지방법원 등의 법관이 사전에 발하는 허가장에 의해 임검(臨檢), 수색 또는 차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정취인위원회는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해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는 검사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4. 검사총장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공정취인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제74조)을 폐지한다.

5.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제1심재판권을 동경고등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지방법원과 함께 각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및 동경지방법원의 관할에도 속하는 것으로 한다.

※ 범칙조사 부문과 행정조사 부문간에는 국세·증취위와 같은 형태의 방화벽을 설치한

다(구체적으로는 조직령상 소장사무(소관업무)를 명확히 분리한다. 범칙조사를 행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당해 직에 있는 자는 행정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행정조사 부문에서 직접·자동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른 정보, 증거물 등의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벌칙규정의 재검토 ➤

1. 범인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된 배제조치명령에 있어서의 위반 죄에 관련된 자를 3억엔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2. 제4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현장검사, 보고·제출 등의 명령)에 관련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엔 이하의 벌금과 함께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한다.

6. 심판절차 등의 재검토 ➤

1. 제3조, 제6조, 제8조, 제19조,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고 또는 심판개시결정을 행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행위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배제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2. 배제조치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는 당해 명령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배제조치명령을 받는 사람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정취인위원회는 당해 의견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당해인의 증거에 대해 설명을 한다.
3.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당해 행위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현행 1년)으로 한다.
4. 배제조치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배제조치명령서 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당해 기간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정한 정도 연장(불변기간으로 하지 않는다)하는 것으로 한다.
5. 배제조치명령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제조치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징금 납부를 명할 경우에 배제조치에 관한 심판절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납부를 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7.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명령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현행 2개월 후)로 한다.

8.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납부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으며, 심결에서 당해 납부명령이 유지된 때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율(금리 상황에 따라서 설정)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심결에서 당해 납부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는 연체금율과 같은 율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9. 배제조치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심인은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해 배제조치명령에 관한 위반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10. 심판절차를 경과한 후 심판청구에 이유가 없는 때는 당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는 때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11.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한 소(訴)였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12. 심판관의 정원을 5명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두기로 한다.
13. 공정취인위원회는 심판개시결정을 한 후 사건별로 심판관을 지정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심판종결까지의 절차(보고명령, 물건의 제출명령, 조사촉탁, 검증, 증거의 채택 등을 포함한다)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4. 지정된 심판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하도록 시킨 심판절차에 관한 사무를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

7.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징수규정의 재검토▶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징수규정(제18조의2)을 폐지한다.

※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의 규정(제8조의4)을 불가결 시설 등을 가지는 사업자에 의한 참 입저지행위의 배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금번의 개정대상으로 하지 않는다.